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591)

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남창진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
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요내용을
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
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방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
도면 등의 도시관리계획안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을 통
해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
용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
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